

# 청년안심주택 **민간임대** 입주(예정)자 안내문

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와 청년안심주택 사업자(시행사, 임대사업자) 간 “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”을 체결하여 공급되며, **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혼합되어 있는 주택**입니다.

각각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임대차계약 및 세대를 운영·관리 하며, **‘민간임대주택’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청년안심주택 사업자(시행사, 임대사업자)가 임대차계약 및 세대를 운영·관리 되는 주택**입니다.

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령 및 규정을 따르는 민간임대주택으로서, **민간임대 입주(예정)자들의 임대보증금 관련사고 예방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임차인 필수 확인사항을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.**

## ● 청년안심주택 **민간임대** 입주(예정)자 임대차 계약 진행 시 **확인 필수사항**

| 필수 확인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 법령 및 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b>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여부</b>          | [관련 법령, 협약 내용] <b>사업자(시행사, 임대사업자)</b> 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”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<b>사용검사, 임시사용승인</b> 또는 건축법에 따른 <b>사용승인, 임시사용승인의 신청일(신청일 이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모집일) 이전까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함</b><br>※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가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 이후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, 보증보험은 이행되지 않습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대항력, 우선변제권 확보</b>            | <b>대항력(점유, 전입신고)과 우선변제권(확정일자)</b> 를 갖춰야, <b>임차인 보호(선순위자)</b> 가 될 수 있습니다.<br>※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는 경우, 보증보험은 이행되지 않습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최우선변제권 해당여부</b>              | [관련 법령] 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, 제8조”에 따라 <b>소액임차인(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가진 임차인)</b> 은 <b>최우선변제권(대항력 요건을 갖춘 세입자가 다른 채권보다 먼저 일정금액을 지급받을 권리)</b> 을 가짐<br>※ 소액임차인 기준 금액(*서울시): 1억6,500만원 이하(‘23.02.21~), 1억5,000만원 이하(‘21.05.11.~’23.02.21.)<br>최우선변제 금액(*서울시): 5,500만원 이하(‘26년 현재 기준). 따라서 5,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은 전액 환수 가능<br>※ 대항력 요건 : 전입신고(*신고일 다음날부터 대항력 효력) |
| <b>권리관계 등 상황</b><br>(*계약일, 잔금일) |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(등기부등본상) 잔금일 <b>익일까지 물건지(입주단지)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근저당설정, 가압류 등 권리관계변동이 없어야 하며,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에는 반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를 열람하여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제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</b><br>※ 계약 전 가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 상황 확인 방법 : 임대차계약기간 시작 직전 임대주택에 대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보증서 발급일과 임대차계약 시작일 사이 새로운 근저당, 가압류, 가처분 등이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원상복구 계약 전</b>                | 입주자 퇴거 시 세대 주거전용 부분 시설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, 부주의로 인해 파손 또는 고장이 있는 경우, 임차인은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<b>주택을 인도받는 즉시 세대 주거전용 부분 시설 원상 사진</b> 을 꼭 찍어두시기 바랍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● 청년안심주택 **민간임대** 입주(예정)자 임차인 입주 중 **확인 필수사항**

| 필수 확인사항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 법령 및 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b>임대차계약 진행 시 누락사항 유무 확인</b> | 거주 중이라도 위 ‘계약 진행 시 필수 확인사항’ <b>재점검 해보기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★보증보험 미갱신 확인★</b>         | <b>거주 중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갱신 불가 시</b> , 보증회사에서 통보하는 우편 내용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(HUG) 또는 전세금보장 신용보험(SGI) 임차인이 즉시 가입 |

※ **안심주택종합지원센터**에서는 입주 전부터 입주 신청, 계약(갱신), 퇴거까지 정보 제공 등 **원스톱 서비스**를 제공하고 있으며, **서울시 전월세지원센터** 연계를 통한 법률지원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

(청년안심주택종합지원센터 : 02-793-0765~0768, 서울시 전월세지원센터 : 02-2133-1200)

**증산역 청년안심주택**  
**이랜드 PEER DMC 입주자 모집공고**  
(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333-1)

**공공지원 민간임대**

**2026. 07. 28.**

**(주)이베데스다대한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**

## **- 차 례 -**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<b>1. 개      요</b>        | <b>04</b> |
| <b>2. 공급일정</b>            | <b>06</b> |
| <b>3. 공급현황</b>            | <b>07</b> |
| <b>4.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</b> | <b>09</b> |
| <b>5. 청약 신청 방법</b>        | <b>18</b> |
| <b>6.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추첨</b> | <b>21</b> |
| <b>7. 계약안내</b>            | <b>21</b> |
| <b>8. 유의사항</b>            | <b>23</b> |

# 1

## 개 요

### ■ 공급대상주택 개요

- 주택위치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333-1(6호선 증산역 1번 출구, 직선거리 250m)
- 공급호수 : 총 382세대 중 공공지원민간임대 271세대(특별공급 55세대, 일반공급 216세대)
- 단 지 명 : 이랜드 PEER DMC
- 시행사(임대사업자) : (주)이베데스다대한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- 시 공 사 : (주)이랜드건설

※ 1인 1주택형(타입)에 대해서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, 중복 신청할 경우 청약이 모두 탈락 처리됩니다.

※ 공공지원민간임대 271세대를 제외한 111세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SH공사가 별도 공급하며, 해당 세대의 청약·입주 문의는 SH인터넷청약시스템([www.i-sh.co.kr](http://www.i-sh.co.kr)) 및 SH 콜센터(1600-345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청년안심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는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공의 지원을 받아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민간이 건설하고 공급,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.

■ 청년안심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는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, 「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」, 「서울특별시 (청년)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(청년)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」 등에 따라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.

■ 본 주택의 입주신청자(이하 '신청자')는 임차인 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.

■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무주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

■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(이륜차 포함)의 소유·운행이 가능합니다.

(자동차가액 4,542만원 이내의 자동차(이륜차 포함)에 한함)

※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6년 7월 28일(화)입니다.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이며, 모집공고 내 모든 일정 및 일시는 한국시간 기준입니다.

※ 자동차가액 기준은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(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(현행행정규칙))을 준용합니다. (단, 적용 가액은 자동차 소유 지분,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, 자동차 보유 대수, 저공해자동차(보조금 제외)에 따라 다르오니, 지원 전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(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(현행행정규칙))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) \*자세한 내용은 9p '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> 공통사항' 참조

■ 본 주택의 시행사(임대사업자, 이하 임대사업자라 함)는 (주)이베데스다대한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며, 계약자관리, 임대관리(주거서비스 및 임대차계약 관련 일체)는 (주)이랜드자산개발, 시설관리는 (주)이랜드서비스에 위탁하여 수행할 예정입니다.

■ 본 주택은 금융기관에서 일부는 대출로 사업비를 조달하여 건축 중이며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자산 보관 기관인 엔에이치투자증권(주)에 수탁하여 신탁등기가 되어있습니다. 사용승인(준공) 후 구분 건물등기부에 담보대출 등에 대한 사업자의 채무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.

■ 입주예정자 개인의 사유나 설정된 근저당금액으로 일반(개인)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(단지별, 입주예정자 개인별 상이) 계약 전 입주자 스스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,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(등기부등본상) 잔금일 익일까지 물건지(입주단지)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근저당설정, 가압류 등 권리관계변동이 없어야 합니다.

※ 청년안심주택 자체 근저당, 가압류 등에 의해 보증금 대출이 불가능 또는 일부 제한될 수 있으니, 입주예정자는 계약 전 대출 실행은행에 문의 바랍니다. (확인 방법 : 임대차계약기간 시작 직전 임대주택에 대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보증서 발급일과 임대차계약 시작일 사이 새로운 근저당, 가압류, 가처분 등이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)

※ 단지(임대사업자) 문제로 인한 입주예정자 대출 불가 시 계약 파기 위약금(100만 원)은 전액 환불 조치됩니다. 단, 단지(임대사업자) 문제로 인한 대출 불가 증빙의 책임은 입주예정자에게 있으며 그 외 사유로 인한 계약파기 시에는 위약금(100만 원)이 발생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, 본 위약금은 입주 전 계약 파기에 대한 위약금이며, 계약 개시 후 발생하는 '중도 퇴거 위약금'과는 무관합니다.

■ 본 주택의 임대사업자는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9조 및 서울시와의 협약 내용 등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며, 임대사업자는 이를 임대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합니다.

※ 입주지정기간(보증금 완납) 전 임대보증금 보증(전액) 상품 가입 예정이며, 임대보증금 보증서 발급 일정 에 따라 입주지정기간(보증금 완납기간)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
※ 가입 기관 사유 및 서울시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입주 전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보험을 가입할 예정이며, 가입 시기를 이행하지 못하여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은 전액 환불됩니다.

[임대보증금보증 기간(예정) : 2026.08월 예정, 가입일로부터 2년]

\*임대보증금 50% 비율 초과로의 비율 전환 불가(보증보험 가입액 관련 사유)

※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유효기간 이전에 갱신 예정이며, 보증보험 미갱신시 사업주는 계약해지를 원하는 입주인에게 계약해지 후 보증금 반환 예정입니다.

※ 다만,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보증기간 만료일에 맞추어 보증기간 연장을 위한 보증서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료를 대신 납부하여 보증기간을 자동 연장할 수 있으므로, 반드시 임대보증금 보증기간 만료 전 HUG(1566-9009)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, 보증수수료의 75%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, 25%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. (임대료는 보증수수료가 미포함 된 금액이므로 입주 후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며, 임대사업자가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.)

■ 본 주택의 임대사업자 (주)이베데스다대한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, 당 임차인 모집공고일(2026.07.28.) 전 계약금에 대한 보증보험 전부보증상품에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. (계약금 보증보험 보증기간 : 2026.07.16.~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)

■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6.07.28.입니다. 이는 청약 자격의 판단 기준일이며, 청약 신청 접수는 PC를 활용한 인터넷 접수로만 가능합니다. (본인 인증 필수)

■ 본 주택은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등에 따라 임대사업자로서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. 단, 임대사업자와의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10년 이후에도 거주할 수 있습니다.

■ 본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,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.

■ 본 주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.

■ 본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증산역 청년안심주택 이랜드PEER DMC 홍보관(1551-8970)을 통해 상담을 실시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.

■ "임차인"은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. 또한, 사업자(임대사업자)는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,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 이를 사전에 인지하시어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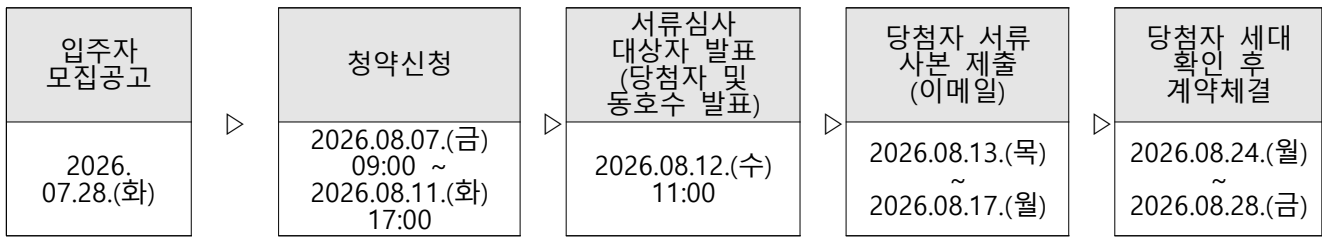
■ 현재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임대의무기간(10년) 경과 후 본 공동주택의 매각 또는 임대기간 연장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.

■ 본 주택은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별표1 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" 비고 3)에 따라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재계약 체결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·소득요건 및 청년특별공급의 연령·소득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. 다만, 소득요건의 경우 자격 요건상의 기준을 30퍼센트 포인트 초과하여 증액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갱신 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## 2

## 공급일정

### ■ 공급절차 및 일정



- 입주지정기간(예정) : 2026.10월 중

※ 현장 여건 및 임대보증금 보증서 발급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별도로 공지될 예정입니다.

- 청약 접수는 당사 홈페이지 <https://elandpeer.com/dmc>에서만 가능합니다. (방문 신청 불가)

- 인터넷 청약신청 기간 : 2026. 08. 07.(금) 오전 9시 ~ 2026. 08. 11.(화) 오후 5시까지

※ 본 주택은 계약체결 이전 당첨자들에 한해 당첨 호실을 사전공개 예정입니다.

※ 당첨자 세대확인은 계약 체결 전에 진행되며, 추후 일정 변경 시 계약자들에 한하여 별도 통보 후 진행 예정입니다.

※ 청약 신청은 지정된 기간에만 가능하며, 해당 청약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당첨자의 모든 서류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에 이메일(스캔본)로 제출하여야 하며,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원본 미제출 시 당첨 권한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.

※ 청약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에 따라 예비입주자(공급 세대수의 2,000%(20배수)) 선정을 고려해 일정 비율 이상 서류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며, 적격자를 대상으로 당첨자 및 동·호수를 선정합니다.

※ 당첨자 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'부적격사유'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.

※ 사용승인(준공)은 8월 중 완료 예정이며, 대출기관에서 대출진행 시 필요한 준공 필증 또는 사용승인서 등은 추후 발급해 드릴 예정이오니 계약 및 대출상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 ■ 청약신청(인터넷청약) 관련 문의

- 대표번호 : 1551-8970, 매일(월~일) 10:00 ~ 17:00 (점심시간 12:00 ~ 13:00 운영 중단)

- 홈페이지 : <https://elandpeer.com/dmc>

※ 청약 신청은 PC를 통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, 본인 인증을 통해 1인 1건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.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.

### ■ 상담관련 유의사항

- 청약은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청약자 본인이 신청하신 내용은 미숙지, 착오 등의 이유로 수정되지 않습니다.)

-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한 전화 상담은 홍보관(1551-8970)을 통하여 시행하고 있으며,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에 대한 자료 없이 상담을 진행하오니 청약과 관련한 방문 및 유선-온라인 상담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(SMS 및 이메일 상담은 불가합니다.)

- 금회 공급단지는 당사 홈페이지(<https://elandpeer.com/dmc>)에서 보다 상세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
## 3

## 공급현황

■ 공급위치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333-1

■ 공급규모 : 공동주택 지하 4층~지상 최고 19층 1개동 총 382세대 중 민간임대 271세대 (특별공급 55세대, 일반공급 216세대) 공급

■ 공급대상

| 공급<br>유형 | 타입                  | 공급<br>호수 | 특별<br>공급 | 일반<br>공급 | 세대당 계약면적(m <sup>2</sup> )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발코니<br>확장면적<br>(m <sup>2</sup> )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주거전용                      | 주거공용    | 기타공용<br>(*주차장<br>면적 포함) | 합계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청년       | 20.5025<br>(20TYPE) | 135      | 55       | 80       | 20.5025                   | 11.1144 | 20.4199                 | 52.0368  | 5.6550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46.3766<br>(46TYPE) | 14       | -        | 14       | 46.3766                   | 22.8086 | 46.1900                 | 115.3752 | 14.0250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신혼<br>부부 | 46.3766<br>(46TYPE) | 15       | -        | 15       | 46.3766                   | 22.8086 | 46.1900                 | 115.3752 | 14.0250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59.9065<br>(59TYPE) | 107      | -        | 107      | 59.9065                   | 30.0529 | 59.6656                 | 149.6250 | 17.6006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합계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271      | 55       | 216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- 본 주택은 공급유형별(청년, 신혼부부) 및 주택 타입별로 나뉘며, 청약 신청 시 공급유형별(청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, 신혼부부 일반공급) 및 주택 타입별로 청약 접수가 진행되오니, 청약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

- 본 주택에 청약 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 주택형(타입) 별로 1건만 가능하며, 신혼부부(예비신혼부부 포함)는 1세대로 간주하여 부부(예비부부) 중 1명이 대표로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, 두 명이 각각 중복 신청 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.

- 본 주택은 인터넷 청약 시, 주거전용(타입)별로 구분되어 청약접수가 진행되오니, 청약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

- 청약에 적용되는 주택형(타입) 명은 사업계획승인(건축허가) 도서에 표기된 주택형(타입) 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-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, 주거공용면적은 계단, 복도,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입니다. 또한 그 밖의 공용면적은 공급면적을 제외한 공용면적으로, 관리사무소, 경비실, 주민공동시설, 기계·전기실 등이 포함되며, 상기 계약면적에는 위에 설명 드린 주거전용면적, 주거공용면적, 기타공용면적,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
- 「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의 세부 산정 기준」 등과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엘리베이터(E/V)실, 설비배관실(PD), 배연설비시설, 급기실(A/D), 전기통신실(EP/TPS) 등은 면적산정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.

- 본 주택은 주거목적 외 상업적 목적(사업자등록 불가)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며, 상기 타입별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사용승인(준공) 시 건축법 제26조(허용 오차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(허용오차)에 따른 허용오차 범위 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변경된 면적은 임대료 및 관리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
- 세대 내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할 목적으로 청약신청 및 계약은 불가하고, 입주자모집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.

- 상기 공급호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며 공공임대주택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
- 모든 주택타입은 발코니 확장공사를 진행하여 공급될 예정이며 실제 사용하게 되는 면적은 상기 주거전용면적보다 늘어나게 됩니다.

- 관리비는 계약면적으로 부과됩니다.

## ■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

### (1) 특별공급

- 청년(55세대) 임대 보증금 및 월임대료

(단위 : 만원)

| 공급<br>유형 | 주거<br>전용<br>(타입)     | 공급<br>호수 | 표준형(보증금 50%)       |     | 선택형1(보증금 30%) |     | 선택형2(보증금 40%) |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|-----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보증금                | 임대료 | 보증금           | 임대료 | 보증금           | 임대료 |
| 청년       | 20.5025㎡<br>(20TYPE) | 55       | 8,200              | 34  | 4,900         | 48  | 6,600         | 41  |
| 합 계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55       | 전체 민간임대 세대수의 20.3% |     |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|

※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거나,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비율을 30%, 40%, 50% 단위로 전환이 가능하며, 제시된 비율 외 임대보증금의 변경은 사업주와 협의 가능합니다. 계약 이후 임대보증금 비율은 변경 불가합니다.

### (2) 일반공급

- 청년(94세대), 신혼부부(122세대) 임대 보증금 및 월임대료

(단위 : 만원)

| 공급<br>유형 | 주거<br>전용<br>(타입)     | 공급<br>호수 | 표준형(보증금 50%)       |     | 선택형1(보증금 30%) |     | 선택형2(보증금 40%) |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|-----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보증금                | 임대료 | 보증금           | 임대료 | 보증금           | 임대료 |
| 청년       | 20.5025㎡<br>(20TYPE) | 80       | 10,000             | 41  | 6,000         | 58  | 8,000         | 49  |
|          | 46.3766㎡<br>(46TYPE) | 14       | 20,200             | 77  | 12,100        | 108 | 16,200        | 92  |
| 소 계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94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|
| 신혼부부     | 46.3766㎡<br>(46TYPE) | 15       | 20,200             | 77  | 12,100        | 108 | 16,200        | 92  |
|          | 59.9065㎡<br>(59TYPE) | 107      | 25,200             | 96  | 15,100        | 134 | 20,100        | 115 |
| 소 계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122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|
| 합 계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216      | 전체 민간임대 세대수의 79.7% |     |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|

※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거나,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비율을 30%, 40%, 50% 단위로 전환이 가능하며, 제시된 비율 외 임대보증금의 변경은 사업주와 협의 가능합니다. 계약 이후 임대보증금 비율은 변경 불가합니다.

### (3) 유의사항

-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며, 공용면적 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.
- 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의 10%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하며, 임대보증금 잔금은 실입주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.
-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,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,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의 범위 이내로 청구됩니다. (자세한 사항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됩니다.)
- 상기 주택형(타입) 별 임대조건은 민간임대 사업시행자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므로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- 임대조건은 주택형(타입) 별 차등이 있으므로 호실별 임대조건은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- 임대보증금 반환 시 미납임대료,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,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, 손해배상금,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위 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.
- 월임대료는 당월납 말일이고 기산일은 실입주일(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한 날, 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 시 입주지정기간의 마지막 날)로부터 발생되며, 매월 말일(토요일 및 일요일, 법정 공휴일인 경우 익일)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. 입주 당월의 임대료는 입주일에 따라 일할 산정되며 **당월** 월임대료 납부일에 납부하시면 됩니다.
-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,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.
- 당첨 후 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의 10%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, 임대보증금 잔금은 실입주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.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미납 시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, 위약금 1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 (위약금을 제외한 계약금은 절차에 따라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반환됩니다.)
- 입주 시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, 이삿짐의 도착,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(비밀번호)를 발급합니다.
- 잔금납부일(입주일)이 주말(토요일, 일요일)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하며,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모든 주택타입은 발코니 확장공사를 진행하여 공급될 예정이며, 실제 사용하게 되는 면적은 상기 주거전용면적보다 늘어나게 됩니다.
-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,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에 사업주체가 지정한 양식으로 퇴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임차인 임대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위탁한 주택관리업체가 지정한 양식으로 퇴거신청서를 제출)
- 입주자 퇴거 시 세대 주거전용 및 공용 부분 시설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, 부주의로 인해 파손 또는 고장이 있는 경우, 임차인은 원상복구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, 그 비용에 대해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유보금(최대 300만원 한도(파손(고장) 정도에 따라 차등)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단, 그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유보금을 증액할 수 있음)으로 우선 공제할 수 있습니다. 우선 공제한 유보금에서 원상복구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정산한 나머지 차액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반환됩니다.

## 4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

### ■ 공통사항

-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6. 07. 28. 입니다.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.
-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(나이)은 모두 만 연령(나이)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,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 중 '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(혼인 후 2,555일)인 자'도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합니다.
-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예정 세대원 전부는 무주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
- 이 주택은 청약자(당첨자)와 계약자, 입주자(전입자)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합니다.

\*신혼부부의 경우 청약자(당첨자) 명의로 계약 체결(공동명의 계약 불가)

-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(이륜차 포함)의 소유·운행이 가능합니다.  
(자동차가액 4,542만원 이내의 자동차(이륜차 포함)에 한함)

※ 자동차가액 기준은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(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(현행행정규칙))을 준용합니다. (단, 적용 가액은 자동차 소유 지분,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, 자동차 보유 대수, 저공해 자동차(보조금 제외)에 따라 다르오니, 지원 전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(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

업무처리기준(현행행정규칙))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)

※ “자격 및 자산 자동차가액 판단”과 “등록(사용) 자동차가액 판단”의 차이

· 자격 및 자산 자동차가액 판단 : 기준 가액 이하

· 등록(사용) 자동차가액 판단 : 기준 가액 이하만 등록하여 사용 가능 (단, 등록(사용) 할 자동차가액 판단 시 지분 소유는 미인정. 등록(사용) 할 자동차 전체 자동차가액으로만 판단)

(‘입주자 필수 주차공간’의 경우 차종별 등록 기준(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용 자동차 등록 기준)에 부합하여야 하며, 기준 자동차가액 이내의 자동차(이륜차 포함)만 단지에 등록하여 소유·운행 가능)

(‘입주자 일반 주차공간’의 경우 기준 자동차가액 이내의 자동차(이륜차 포함)만 단지에 등록하여 소유·운행 가능)

- ‘입주자 필수 주차공간’ 이용 등록을 필요로 하는 세대의 경우 자동차가액 증빙서류와 차종별 등록 기준(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용 자동차 등록 기준)을 구분하여, 해당 증빙서류 일체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 이용 요금은 공영주차장 요금(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경우 50%) 이하입니다.

- ‘입주자 일반 주차공간’ 이용 등록을 필요로 하는 세대의 경우 자동차가액 증빙서류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 이용 요금은 주변 민영주차장 요금의 70% 이하입니다.

- ‘입주자 필수 주차공간’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공간은 아래의 배정원칙에 따라 단지 입주자와 사업자 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| 구 분        | 1순위 (10% 이하) |                    | 2순위                    | 그 외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대 상        | 나눔카          | 자치구 거주자<br>우선주차    | 입주자 일반                 | 외부인<br>(인근 거주자 등) |
| 주 차<br>요 금 | 업체 협의<br>요금  | 자치구(관리공단)<br>협의 요금 | 주변 민영주차장<br>요금의 70% 이하 | 주변 민영주차장<br>요금 이하 |

※ ‘자치구 거주자 우선주차’는 각 구별로 확보된 인근 거주민을 위한 주차공간이며, 단지 입주자만을 위한 주차공간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주차 면수 부족으로 인해 자동차 등록 및 운행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. (수요조사를 통해 재안내 예정입니다.)

※ 공공임대 입주세대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추후 배정 주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■ “입주자 필수 주차공간” 등록 기준 : 아래 차종별 등록 기준(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용 자동차 등록 기준)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당 1대만 등록하여 사용 가능

| 차 종                    | 운행방식 | 등록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장애인 및<br>국가유공자용<br>자동차 | -    | -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인 경우<br>- 자동차가액 4,542만원 이내 |

※ 입증의 책임 : 단지 사업자의 정기적인 입주자 자동차 등록(사용) 운행 실태조사 시 자료를 제출하여 자동차등록 기준에 부합함을 증빙하여야 합니다.

※ 통지의 의무 : 차종 변경(처분 포함) 등의 변동이 생겼을 경우 단지 사업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
■ “입주자 필수 주차공간” 이용 등록 증빙서류

| 차 종                 | 증명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용<br>자동차 | -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록증(세대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증명)<br>- 자동차 등록증, 자동차가액 증명서류 |

※ 자동차가액 조회 방법 : “보험개발원 홈페이지” 또는 “복지로 포털” 자동차 기준가액 조회

※ 이륜차가액 기준 : 해당 연도 이륜차 시가표준액

■ “입주자 일반 주차공간” 등록 기준 : 세대당 1대(이륜차 포함)만 등록이 가능하며, 공간 부족시 등록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.

■ 유의사항

- 본 주택에 청약 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 주택형(타입) 별로 1건만 가능하며, 신혼부부(예비신혼부부 포함)는 1세대로 간주하여 부부(예비부부) 중 1명이 대표로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, 두 명이 각각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.
-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(나이)은 모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 단,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 중 ‘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이 7년(2,555일) 이내인 자’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합니다.
- 신청 자격은 임차인 모집공고일 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, 갱신 계약 시 자격요건은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[별표1]에 따릅니다. 또한 당첨 후 주택 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-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‘부적격사유’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.
- “특별공급”은 계층별 소득순위를 우선 적용하고 경쟁이 있을 경우 지역 순위에 따르며, 동일순위가 있을 경우 전산 추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.
- “일반공급”은 각각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자격 유형으로 접수하고, 소득·지역요건 없으며 경쟁 시 무작위 전산 추첨하여 공급합니다.
- 신청 유형별로 청약세대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2,000%(20배수)를 예비자로 선정하며, 예비순번은 공정한 추첨 방식에 의해 무작위로 부여됩니다. 당첨자 미계약 또는 계약 취소, 계약 후 미입주,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실 발생 시 예비순번대로 공급하며, 예비자의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. ※ 예비자 소진 후에도 공실이 발생할 경우 탈락자를 대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. 해당의 경우에도 순번은 공정한 추첨 방식에 의해 무작위로 부여되며,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.
- 예비입주자 추첨 시 특별공급 세대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, 일반공급 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청약 신청한 공급유형 및 주택형(타입) 별 예비순번대로 공급하며, 동·호수는 추첨의 방법으로 배정합니다.
- 예비자입주자의 계약 일정 및 안내사항은 개별 고지할 예정입니다.

■ 특별공급 신청자격

- (1) 청년 계층 신청자격 : 입주자모집공고일(2026.07.28.)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(외국인제외)  
 ※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6.07.28.입니다.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.

- ①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(1986년 7월 29일부터 2007년 7월 28일 사이에 출생자)  
 ② 미혼 ③ 무주택자  
 ④ 소득 기준(\*아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의함)  
 ※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(태아포함)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 이하일 것  
 ※ 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“해당 세대” 월평균 소득  
 ※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,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“해당 세대” 모두의 소득  
 ※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“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” 제출 후 신청자와 “부모”의 월평균 소득 합계(신청자 포함 3인 기준)  
 ⑤ 자동차(이륜차 포함) 무소유·미운행자 또는 자동차가액 4,542만원 이내의 자동차(이륜차 포함) 소유·운행자  
 ⑥ 본인 자산 가액 2억5,100만 원 이하

- “해당 세대”란 주민등록등본 상 직계존비속이며 형제자매의 소득은 제외합니다.  
 - “무주택자”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.  
 - 자동차가액 기준은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(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(현행행정규칙))을 준용합니다. (단, 적용 가액은 자동차 소유 지분,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, 자동차 보유 대수, 저공해자동차(보조금 제외)에 따라 다르오니, 지원 전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(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(현행행정규칙))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) ※ 자세한 내용은 10p ‘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> 공통사항’ 참조

-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(단위 : 원)

| 순 위 |      | 1인 가구     | 2인 가구     | 3인 가구     | 4인 가구      | 5인 가구      |
|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1순위 | 100% | 3,813,363 | 5,866,270 | 8,168,429 | 8,802,202  | 9,326,985  |
| 2순위 | 110% | 4,194,699 | 6,452,897 | 8,985,272 | 9,682,422  | 10,259,684 |
| 3순위 | 120% | 4,576,036 | 7,039,524 | 9,802,115 | 10,562,642 | 11,192,382 |

※ 6인 이상 가구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(579,278원)을 합산하여 산정

※ 1인당 평균금액=(5인가구 월평균소득-3인가구 월평균소득) / 2

(2) 특별공급 선정 기준 및 방법

※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6.07.28.입니다.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.

- ① 소득 기준 순위  
 - 1순위 : 기준소득 100% 이하  
 - 2순위 : 기준소득 110% 이하  
 - 3순위 : 기준소득 120% 이하  
 ② 지역 기준 순위 : 동일 소득일 경우 거주지역 우선 (대학 및 직장 소재지 포함)  
 - 1순위 :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(서울특별시 서대문구)  
 - 2순위 :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 외(서울특별시)  
 - 3순위 : 그 외 지역  
 \* 동일 순위 경쟁 시 “소득순위 → 지역순위 → 추첨” 순으로 선정 됩니다.

- 특별공급은 각각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(타입) 별로 접수하여, 상기 소득 및 해당 지역의 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고 동일 순위 발생 시 공정한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,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역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.
- 당첨자 선정 후 동·호수 결정(동·호수 변경은 불가) 또한 공정한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.
-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'부적격사유'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.

### (3) 특별공급 제출서류 \*모집공고 이후 발행분

※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6.07.28.입니다.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.

※ 모든 제출서류는 임차인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.

| 제출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| 발급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유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신분증 사본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 면허증 中 택1)<br>※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| 행정복지센터, 구청, 시청, 정부24(인터넷)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주민등록등본 (세대구성정보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[본인 발급용]<br>- 발급 용도 : 임대계약용<br>※"정부24"에서 인감증명서발급시, 발급용도 "기타" → 기타제출용도 "계약용"→ 제출처 " 이랜드피어DMC" → 출력<br>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발급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. 주민등록초본 (과거 주소변동사항 등 전체 포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.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. 혼인관계증명서 (신청자 본인 기준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. 월평균 소득(해당 세대원(인원) 전체) 및 자산 현황 확인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|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8.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공급신청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. 서약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0. 의무준수 서약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1.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2. 주택소유 확인<br>(청약사전검증용 주택소유정보로 "주택 및 분양권 소유 등" 확인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| 청약홈<br>(www.applyhome.co.kr)<br>(인터넷)             | ※ 발급순서 :<br>청약홈(www.applyhome.co.kr) →<br>청약자격확인 →<br>주택소유확인 →출력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3.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(*전전년도~해당년도)<br>(세목전체 / 과세·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)<br>(서울시 내역 1부, 전국 내역 1부)<br>※ 무주택/자동차(이륜차 포함) 무소유 및 자산 확인<br>- 청년 : 본인만 출력 제출<br>- 신혼부부 :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<br>- 예비신혼부부 : 예비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<br>※ "과세내역 없음" 인 경우도 발급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| 행정복지센터,<br>구청, 시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직접 방문하여 발급<br>-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(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(현행행정규칙)) 준용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소득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4.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(해당 세대원(만 19세 이상) 전체) |       |  | 국민건강보험공단.<br>정부24(인터넷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. 월평균 소득현황 확인서(해당 세대원(만 19세 이상) 전체)   |       |  |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무소득자  |  | 사실증명<br>(신고사실없음)<br>군복무 및 종교기관 등록자는<br>표 하단 내용 참고 | 세무서, 홈택스(인터넷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소득여부 확인 후<br>해당 항목 택1<br><br>- 모집공고일 이후<br>세대가 변동된<br>경우 모집공고일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|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<br>(재직증명서 포함)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반근로자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 | 신규취업자 | -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<br>또는<br>갑종근로소득에 대한<br>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<br>- 재직증명서 | 해당 직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준 세대구성원의<br>월평균 소득현황<br>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프리랜서  | 종합소득세 신고자 :<br>소득금액증명원<br>종합소득세 미신고자 :<br>계약서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개인사업자 | -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<br>- 사업자등록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무서, 홈택스(인터넷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신규사업자 | -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,<br>-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<br>- 사업자등록증                | 국민연금관리공단,<br>세무서, 홈택스(인터넷)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법인사업자 | -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<br>- 사업자등록증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무서, 홈택스(인터넷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자산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7.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<br>-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[내계좌 한눈에]에서 본인명의<br>(금융, 주식, 보험 등 전체) 발급 후 작성<br>- 주거래 은행에서 신용정보조회서 본인명의(대출 전체)<br>발급 후 작성 |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홈페이지에서 양식<br>다운로드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부동산 및<br>자동차등의 자산<br>자료는 제출하신<br>지방세세목별과세,<br>청약홈 주택소유정보<br>등으로 확인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※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역서 첨부<br>- 전체 내역(각각의 상세내역 전체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금융결제원(인터넷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※ 신용정보조회서 첨부<br>- 전체 내역(각각의 상세내역 전체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거래 은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8.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(사본, 해당자만 제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현재 거주하고 있는<br>주택이 전·월세인 경우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9. [자동차 소유자] 자동차(이륜차 포함) 가액 증명 자료<br>※ 자동차등록원부, 자동차등록증 추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험개발원 홈페이지<br>또는 복지포털,<br>정부24(인터넷)        | 공공주택 입주자<br>자산기준(공공주택<br>입주자 보유자산<br>관련 업무처리기준<br>(현행행정규칙)) 준용     |
| 20. [입주 자격] 자동차(이륜차 포함) 가액 증명 자료<br>※ 자동차등록원부, 자동차등록증 추가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1. 지역 기준 순위 대학 및 직장 소재지로 할 경우<br>- 대학 : 재직증명서<br>- 직장 : 재직증명서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| 재직증명서 : 대학<br>재직증명서 : 직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2. 그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★전입신고 후 등본(당 사업지로 주소이전 된) 추가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| 행정복지센터,<br>정부24(인터넷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★입주 당일 전입<br>신고를 한 후<br>(입주 후 7일<br>이내 제출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: 전년도 1월 1일부터 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.

※ 군 복무 중이어서 건강(의료)보험증이 없는 경우: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. 군복무자(직업군인 제외)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
※ 종교기관(교회, 사찰 등)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된 경우: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,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합니다.

※ 당첨 후 서류제출 기간 내 e-mail(ebethesda5@naver.com, 계약 체결시 원본제출)로 제출해야 합니다.

※ 제출 서류 변동시에는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, 실제 제출서류는 상기 서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- 홈페이지 : <https://elandpeer.com/dmc> 인터넷 청약 신청

- 당첨 후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 상기 자격확인 서류를 방문 또는 e-mail(원본은 계약 체결 시 제출)의

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계약 체결 및 당첨자 세대확인 등의 절차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
- 예비 신혼부부 자격의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에 대한 증명서류(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)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임차인의 입주가 제한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 계약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.

-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
-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'부적격사유'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.

- '입주자 필수 주차공간' 이용 등록을 필요로 하는 세대의 경우 자동차가액 증명서류와 차종별 등록 기준(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용 자동차 등록 기준)을 구분하여, 해당 증빙서류 일체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 이용 요금은 공영주차장 요금(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경우 50%) 이하입니다.

- '입주자 일반 주차공간' 이용 등록을 필요로 하는 세대의 경우 자동차가액 증명서류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 이용 요금은 주변 민영주차장 요금의 70% 이하입니다.

#### ■ 일반공급 신청자격

(1) 청년 계층 신청자격 : 입주자모집공고일(2026.07.28.)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(외국인제외)

※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6.07.28.입니다.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.

-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①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(1986년 7월 29일부터 2007년 7월 28일 사이에 출생자)</li><li>② 미혼 ③ 무주택자</li><li>④ 소득 및 자산, 지역 요건 없음</li><li>⑤ 자동차(이륜차 포함) 무소유·미운행자 또는 자동차가액 4,542만원 이내의 자동차(이륜차 포함) 소유·운행자</li></ul>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- 신청자 본인은 무주택자여야 하며,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합니다.

- '무주택자'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.

- 자동차가액 기준은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(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(현행행정규칙))을 준용합니다. (단, 적용 가액은 자동차 소유 지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, 자동차 보유 대수, 저공해자동차(보조금 제외)에 따라 다르오니, 지원 전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(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(현행행정규칙))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) ※ 자세한 내용은 9p '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> 공통사항' 참조

(2) (예비)신혼부부 계층 신청자격 : 입주자모집공고일(2026.07.28.)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(외국인제외) ※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6.07.28.입니다.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.

-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①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(1986년 7월 29일부터 2007년 7월 28일 사이에 출생자, 신청자만 해당, 배우자 무관)</li><li>② 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,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</li><li>③ 신혼부부의 경우 "무주택세대구성원",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</li><li>④ 소득 및 자산, 지역 요건 없음</li><li>⑤ 자동차(이륜차 포함) 무소유·미운행자 또는 자동차가액 4,542만원 이내의 자동차(이륜차 포함) 소유·운행자</li></ul>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- 신혼부부는 혼인 후 7년 이내(혼인 후 2,555일 까지)의 부부를 말합니다.

- 신혼부부(예비신혼부부 포함)는 1세대로 간주하여 부부(예비부부) 중 1명이 대표로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, 두 명이 각각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.

- 신혼부부(예비신혼부부 포함)형은 청약을 신청한 당첨자 명의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, 부부공동명의의 계약은 불가합니다.

- "무주택세대구성원"이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, 이때의 '세대'란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(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)을 말합니다.

- ① 신청자 본인
- ② 신청자의 배우자
-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(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
-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
-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신청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

- '무주택자'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.

- 자동차가액 기준은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(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(현행행정규칙))을 준용합니다. (단, 적용 가액은 자동차 소유 지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, 자동차 보유 대수, 저공해자동차(보조금 제외)에 따라 다르오니, 지원 전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(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(현행행정규칙))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) ※ 자세한 내용은 9p '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> 공통사항' 참조

### (3) 일반공급 선정기준 및 방법

※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6. 7. 28일입니다.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.

- 일반공급은 각각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(타입) 별로 접수하여, 공정한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,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역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.

- 당첨자 선정 후 동·호수 결정(동·호수 변경은 불가) 또한 공정한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.

-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'부적격사유'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.

### (4) 일반공급 제출서류 \*모집공고 이후 발행분

※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6. 7. 28일입니다.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.

※ 모든 제출서류는 임차인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.

| 제출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발급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유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신분증 사본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 면허증 中 택1)<br>※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<br>※ 신혼부부,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및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<br>※ 모바일 신분증 인정 불가<br>2. 주민등록등본 (세대구성정보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)<br>※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세대분리 시 “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” 추가<br>3.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)<br>※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추가<br>4.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[본인 발급용]<br>- 발급 용도 : 임대계약용<br>※ “정부24”에서인감증명서발급시, 발급용도에“기타” → 기타제출용도에<br>“임대계약용” 기재 →제출처에 “ 이랜드피어DMC” 기재 → 출력<br>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발급 가능<br>5. 혼인관계증명서 (신청자 본인 기준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)<br>※ 청년의 경우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<br>※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“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” 추가<br>(입주 전 혼인신고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)<br>6.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공급신청서<br>7. 서약서<br>8.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<br>9. 의무준수 서약서 | 행정복지센터,<br>구청, 시청,<br>정부24(인터넷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0. 주택소유 확인<br>(청약사전검증용 주택소유정보로 “주택 및 분양권 소유 등” 확인용)<br>- 청년 : 본인만 출력 제출<br>- 신혼부부 :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<br>- 예비신혼부부 : 예비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<br>11.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(*전전년도~해당년도)<br>(세목전체 / 과세·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)<br>(서울시 내역 1부, 전국 내역 1부)<br>※ 무주택/자동차(이륜차 포함) 무소유 확인<br>- 청년 : 본인만 출력 제출<br>- 신혼부부 :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<br>- 예비신혼부부 : 예비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<br>※ “과세내역 없음” 인 경우도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청약홈<br>(www.applyhome.co.kr)<br>(인터넷)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※ 서식날인방법<br>인감증명서제출자는<br>인감도장날인,<br>본인서명사실확인서<br>제출자는서명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2. [입주 자격] 자동차(이륜차 포함) 가액 증명 자료<br>※ 자동차등록원부, 자동차등록증 추가<br>13. 그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<br>★전입신고 후 등본(당 사업지로 주소이전 된) 추가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행정복지센터,<br>구청, 시청<br><br>보험개발원 홈페이지<br>또는 복지로 포털,<br>정부24(인터넷) | ※ 발급순서 :<br>청약홈(www.applyhome.co.kr) →<br>청약자격확인 →<br>주택소유확인 →출력<br><br>- 직접 방문하여<br>발급<br>- 공공주택 입주자<br>자산기준(공공주택<br>입주자 보유자산<br>관련 업무처리기준<br>(현행행정규칙))<br>준용<br><br>공공주택 입주자<br>자산기준(공공주택<br>입주자 보유자산<br>관련 업무처리기준<br>(현행행정규칙)) 준용<br><br>★입주 당일 전입<br>신고를 한 후<br>(입주 후 7일<br>이내 제출) |

※ 당첨 후 서류제출 기간 내 e-mail(ebethesda5@naver.com, 계약 체결시 원본제출)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※ 제출 서류 변동시에는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, 실제 제출서류는 상기 서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- 홈페이지 : <https://elandpeer.com/dmc> 인터넷 청약 신청

- 당첨 후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 상기 자격확인 서류를 방문 또는 e-mail(원본은 계약 체결 시 제출)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계약 체결 및 당첨자 세대확인 등의

절차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
- 예비 신혼부부 자격의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에 대한 증명서류(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)를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해당 임차인의 입주가 제한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 계약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.

-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
-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'부적격사유'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.

- '입주자 필수 주차공간' 이용 등록을 필요로 하는 세대의 경우 자동차가액 증명서류와 차종별 등록 기준(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용 자동차 등록 기준)을 구분하여, 해당 증빙서류 일체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 이용 요금은 공영주차장 요금(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경우 50%) 이하입니다.

- '입주자 일반 주차공간' 이용 등록을 필요로 하는 세대의 경우 자동차가액 증명서류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 이용 요금은 주변 민영주차장 요금의 70% 이하 입니다.

## 5 청약 신청 방법

### ■ 청약 신청 방법

- 신청접수 일정 : 2026. 08. 07(금) 오전 9시 ~ 2026. 08. 11(화) 오후 5시

- 청약방법 : <https://elandpeer.com/dmc> 인터넷 청약 신청

- 홍보관(1551-8970)을 통하여 입주자모집 공고의 내용과 관련한 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나, 간혹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착오 안내가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방문 및 전화 상담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, 청약은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시는 것임으로 청약자격 미숙지, 착오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청약자 본인이 신청하신 내용은 자격 미숙지, 착오 등의 이유로 수정되지 않습니다.)

- 청약접수는 PC를 이용한 인터넷 청약(본인 명의 휴대폰 필수)으로만 접수하며, 인터넷 청약 접수 대행을 위한 방문 청약은 진행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특별공급 청약 시 지역순위 확인을 위한 거주지 또는 소득활동 사업장, 대학 소재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6. 07. 28) 현재 거주하는 지역, 재직 사업장 및 재직 대학을 의미하며,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되기 전 사항으로 인정하여 드리지 않습니다.

- 당첨자 또는 계약자의 인적사항 변경(개명 등) 및 주소, 연락처의 변경 등으로 인해 관련 안내문과 문자 등이 도달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인적사항, 주소, 연락처 등의 변경 시 반드시 임대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, 통보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당첨자 또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- 당첨 사실 및 계약일정 등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### ■ 신청 시 유의사항

| 관련항목 | 유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신청자격 | ○ 청년 계층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하며, 신혼부부 계층은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.(예비신혼부부인 경우 구성될 세대 기준)<br>○ 제출 서류 검토 결과 부적격 소명 통보를 받은 분께서는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,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의 기간 내 소명을 위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셔야 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가 소명 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되고 |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| <p>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'주택공급에 관한 규칙' 제53조에 따르며, 임대차 계약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.</li> <li>○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, 무주택자, 무주택 세대구성원, 부동산 및 자동차가액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, 계약이 취소되거나 계약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심사서류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심사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,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</li> <li>○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,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</li> <li>○ 신청마감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,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.</li> <li>○ 신청 서류는 임차인으로 선정되지 않은 분은 최대 6개월, 임차인으로 선정되신 분은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후 최대 6개월까지 보관합니다.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당첨이후 연락처(주소, 전화번호)가 변경될 경우, 즉시 그 내용을 임대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통보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</li> <li>※ 당첨 이후 연락이 안 되거나, 당첨 및 계약을 포기하실 경우, 또는 부적격 사유가 확인되었으나 소명치 못하실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다음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.</li> <li>※ 당첨 이후 임차인 모집공고에 명시된 계약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 당첨 및 계약 권리는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.</li> <li>※ 계약 시에는 원본서류를 지참해야 하며, 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예비입주자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신청유형별로 청약세대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2,000%(20배수)를 예비자로 선정하며, 예비순번은 공정한 추첨 방식에 의해 무작위로 부여됩니다. 당첨자 미계약 또는 계약 취소, 계약 후 미입주,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실 발생 시 예비순번대로 공급하며, 예비자의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.</li> <li>○ 예비입주자 추첨 시 특별공급 세대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, 일반공급 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청약 신청한 공급유형 및 주택형(타입) 별 예비순번대로 공급하며, 동·호수는 추첨의 방법으로 배정합니다.</li> <li>○ 예비입주자의 계약 일정 및 안내사항은 개별 고지할 예정입니다.</li> <li>○ 예비입주자 소진 후에도 공실이 발생할 경우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입주자격 요건의 일부를 완화하여 임차인을 모집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완화 내용 및 모집 방법은 별도로 공고합니다.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타사항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입주지정기간(예정) : 2026. 10월 중</li> <li>○ 계약금 납부 계좌 : 국민은행 389801-01-247665</li> <li>※ 본 주택은 관련법에 따라 신탁등기가 되어있습니다. 사용승인(준공) 후 구분 건물소유 권등기부에 담보대출 등에 대한 사업자의 채무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될 수 있으며, 계약 혹은 입주 시점 신탁등기 말소 등으로 인해 임대보증금 납부 계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</li> <li>○ 당첨 후 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의 10%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하며, 임대보증금 잔금은 실입주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.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미납 시 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, 위약금 100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. 위약금을 제외한 계약금은 절차에 따라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반환됩니다.</li> <li>○ 월 임대료는 실입주일과 열쇠 및 비밀번호 불출일 중 빠른 날부터 발생되며, 매월 말일 납부하시면 됩니다.</li> <li>○ 입주자는 입주일(잔금 납부 및 열쇠 불출 완료시점)부터 일반관리비, 세대관리비(전기, 수도, 가스, 난방 등 포함), 월 임대료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.</li> </ul> |

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입주 시 잔금 및 추가 서류제출 확인,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입실이 가능하며(열쇠 및 비밀번호를 드리며),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부터 월 임대료, 관리비가 부과됩니다.</li> <li>○ 잔금 납부일(입주일)이 주말(토,일)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.</li> <li>○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</li> <li>○ 연체료는 토·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연체일수로 산정되며, 약정일 이전 납부 시에도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</li> <li>○ 홈페이지에 삽입된 조감도, 투시도,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</li> <li>○ 임대사업자는 준공청소 상태로 제공하며, 입주 청소는 임차인이 실시하시고 퇴거 시 최초 제공 상태(준공청소 상태)로 반환하셔야 합니다.</li> <li>○ 임차인 만족도 조사, 거주자 실태 조사, 임차인 무단전대 조사, 자동차가액 조사 등 임차인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셔야 합니다.<br/>- 수집 정보: 임차인의 성명, 주소, 주민번호, 연락처, 계약내역, 가족사항 등</li> <li>○ 입주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과정에서 위반사항 발생 시 서울시에 신고할 수 있으며,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, 관리방안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서울시 방침 준수하여야 합니다.</li> <li>○ 당첨자 세대확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단지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.</li> </ul>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#### ■ 최대 거주기간 및 갱신계약

| 관련항목   | 유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거주기간 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,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.</li> <li>○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는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임대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.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계약갱신 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4조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,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,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의 범위 이내로 청구됩니다. (자세한 사항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됩니다.)</li> <li>○ 갱신계약 시 자격요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 주택의 입주자격 중 자동차가액, 무주택 요건은 최초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.</li> <li>- 청년의 경우 자격요건 중 연령요건 및 소득요건은 적용하지 않으며, 신혼부부의 경우 자격요건 중 연령 및 혼인 요건, 소득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.</li> </ul> </li> <li>※ 단,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의 경우 그 기준을 30%를 초과하여 증액한 경우는 제외합니다.</li> </ul> |

## 6

##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추첨

### ■ 당첨자 발표

- 발표일 : 2026. 08. 12(수) 11시 예정
- 당첨확인 : 홈페이지 <https://elandpeer.com/dmc>
- 당첨자는 청약자가 청약 신청 시 직접 입력한 자격요건과 제출서류에 의해 선정됩니다. 실제 자격요건이 입력한 자격요건과 다르거나 본인의 입력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,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니 청약 신청 시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당첨자 및 동호수, 예비입주자 순번은 공정한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식에 의하며 당첨자 발표 일정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이오니, 직접 조회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당첨자 발표일에 예비입주자(공급유형별 모집 세대수의 2,000%(20배수) 비율로 추첨) 및 예비순번 또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- 당첨자의 핸드폰 번호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이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개인정보 변경 시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당첨 사실은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야 하며, 개인 이메일, 연락처 등으로 별도 통지는 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,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능합니다.
- 예비자 공급 일정은 사업자(임대사업자)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로 당첨자 계약률은 안내하지 않습니다.

### ■ 동호수 추첨

- 당첨자 : 당첨자 발표 시 공정한 추첨 방식에 의해 동·호수를 무작위로 배정하여 함께 발표합니다.
- 예비당첨자 : 당첨자 계약 이후 발생한 잔여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사업 주체가 정한 방식에 의해 순차 진행되며,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.
- 동호수 추첨은 무작위로 추첨 및 배정되기 때문에 공동주택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층간 소음이나 저층/고층 배정 등의 사유로 동호를 변경하는 건 불가능합니다. (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도 불가능합니다.)

## 7

## 계약안내

### ■ 방문 계약 일시

| 구분  | 계약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계약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당첨자 | 2026. 08. 24.(월)~2026. 08. 28.(금) | 10:00 ~ 17:00<br>(점심시간 12:00 ~ 13:00) |

### 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

- 임대차 계약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진행되며, 당첨자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. 당첨자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을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 있으니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해당 사항을 확인 및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■ 방문 계약 장소 및 유의사항

- 계약장소 : 이랜드 PEER DMC 홍보관(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응암로 126 2층)

- 당첨자는 아래의 준비물과 서류 원본을 준비하여 방문,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.(구비서류 문의 연락처: 1551-8970)

■ 임대보증금(계약금, 잔금) 납부

| 구분                  | 금융기관명 | 납부계좌             | 예금주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임대보증금<br>(계약금 및 잔금) | 국민은행  | 389801-01-247665 | (주)이베데스다대한제5호<br>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|

- 입금 시 반드시 '동호수+계약자 이름'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. (ex: 103 홍길동) 입금 내역에 호수가 없거나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, 임대보증금 납부 확인 및 계약자 특정이 불가능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입주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- 홍보관에서는 현금을 수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지정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.  
-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임대차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,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
■ 공통 준비물 및 제출서류

| 준비물                        | 유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계약금 납부 영수증(입금 또는 이체 확인증) | 현장 계좌이체 가능, 현금 수납은 불가          |
| ② 계약자 본인 인감도장              | 본인 서명 가능, 도장 날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     |
| ③ 본인 명의 휴대폰                |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체결용                 |
| ④ 계약자 신분증                  |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              |
| ⑤ 자격확인 제출서류 원본 일체          | 발급기관 : 정부24(인터넷), 구청, 행정복지센터 등 |

※ 추가 서류는 "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" 참조  
- 대리 계약 시 추가 준비물 :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(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), 계약자 인감증명서(본인 발급분), 계약자 인감도장  
- 지정된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였더라도,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당첨의 효력이 상실됩니다.  
-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임대차 계약체결 시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※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,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
## 8

## 유의사항

## ■ 부설주차장 설치·운영 계획

## ● 부설주차장 배분

- 부설주차장 운영 계획의 수립 및 공지 목적은 유휴 주차장면을 개방하고, 그로 인해 발생한 부대수입을 세대 당 관리비용에서 절감하기 위함입니다.

| 구 분         |                | 계획대수(대) | 계획비율(%)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총 계         |                | 247     | 100     |
|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|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용   | 7 이상    | 2.8 이상  |
| 나머지 주차공간    | 나눔카            | 24      | 9.7     |
|             | 자치구 거주자 우선주차   |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| 입주자 일반         | 198 이하  | 80.2 이하 |
|             | 외부인 (인근 거주자 등) |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| 여유 주차 공간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 비주거 (상가 등)  |                | 18      | 7.3     |

- '입주자 필수 주차공간'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공간은 아래의 배정원칙에 따라 단지 입주자와 사업자 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- 해당 주차기준은 서울시 및 서대문구청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| 구 분     | 1순위 (10% 이하) |                 | 2순위                 | 그 외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대 상     | 나눔카          | 자치구 거주자 우선주차    | 입주자 일반              | 외부인 (인근 거주자 등) |
| 주 차 요 금 | 업체 협의 요금     | 자치구(관리공단) 협의 요금 | 주변 민영주차장 요금의 70% 이하 | 주변 민영주차장 요금 이하 |

※ '자치구 거주자 우선주차'는 각 구별로 확보된 인근 거주민을 위한 주차공간이며, 단지 입주자를 위한 주차공간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주차 면수 부족으로 인해 자동차 등록 및 운행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. (수요조사를 통해 재안내 예정입니다.)

※ 자치구 거주자 우선주차의 경우 서대문구 주차관리팀에서 관리하며, 6개월 단위 임대사업자 주차장 전용 계좌로 별도 정산됩니다.

## ● 주차료(월정기권료)

(단위 : 원)

| 구 분         |                | 월정기권료   | 내 용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|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용   | 32,500  | 공영주차장 요금의 50% 이하 적용    |
| 나머지 주차공간    | 나눔카            | -       | 업체 협의 요금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자치구 거주자 우선주차   | =       | 관리공단 협의 요금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입주자 일반         | 105,000 | 주변 민영주차장 요금의 70% 이하 적용 |
|             | 외부인 (인근 거주자 등) | 150,000 | 주변 민영주차장 요금 적용         |
| 비주거 (상가 등)  |                | 105,000 | 주변 민영주차장 요금의 70% 이하 적용 |

- ※ 자동차(이륜차 포함) 등록 세대에게도 주차료가 부과됩니다. (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)
- ※ 자치구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,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용 주차 요금의 경우, 자치구(관리공단)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※ 해당 단지는 지하 1층 주차장 높이 2.7m, 지하 2층 이하 2.3m이나 CCTV·배수·배기관 등으로 실제 진입 가능 높이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, 화물차·택배차·탑차 등 일부 자동차는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합니다.

● 주차장 운영 수입 활용 및 운영 계획

- 주차장 운영 수익은 전액 입주자관리비 절감 활용을 전제로 하며, 추후 입주자와 사업자 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.
- 입주자모집 이후에는, 임차인대표회의 등과 협의를 통해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.

● 외부개방 커뮤니티 시설 계획

- 공간(+설치) 및 운영 계획

| 시설명      | 전용면적    | 위치   | 설치목적    |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서울형 키즈카페 | 170.72㎡ | 지상1층 | 생활편의 공간 | 생활권 가까이에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조성·운영하는 공공 실내놀이터 |

- 해당 시설은 공동관리비에 부과되지 않습니다.
- 해당 시설은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지 않습니다.

● 입주자전용 커뮤니티 시설 계획

- 공간(+설치) 및 운영 계획

| 시설명        | 전용면적          | 위치              | 운영목적                    | 공간(+설치)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운영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세대창고       | 277.19㎡       | 지하 1층~<br>지하 2층 | 생활편의<br>공간              | •창고 면적에 맞는 개별 창고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운영주체 : 위탁 (이서비스즈)<br>•초기시설비 : 사업자 부담<br>•운영비 : 사용료 부과<br>•운영시간 : 24시간<br>•운영방법 :입주민누구나, 선착순 신청                |
| 무인택배함      | 주출입구<br>근처 배치 | 1층              | 생활편의<br>공간              | •세대수에 맞는 무인택배함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운영주체 : 입주민<br>•초기시설비 : 사업자 부담<br>•운영비 : 무료<br>•운영시간 : 24시간<br>•운영방법 :입주민누구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피트니스<br>센터 | 197.38㎡       |                 | 건강활동<br>지원              | •유산소 머신(런닝머신/바이크)/ 프리웨이트존(덤벨/파워랙등) 배치•런닝머신, 사이클, 체스트플라이, 벤치프레스 등 설치예정         | •운영주체 : 위탁 (이서비스즈)<br>•초기시설비 : 사업자 부담<br>•운영비 : 사용료 부과<br>•운영시간 :08:00~22:00<br>•운영방법 :-사용신청 후 이용 가능 / 출입카드 배부 |
| GX룸        | 72.15㎡        |                 | 생활편의<br>및<br>문화생활<br>공간 | •그룹 운동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한 GX 룸 및 가벼운 스트레칭, 요가 등 1인 이용 가능한 Relax room 공간 구성(매트, 폼롤러등) | GX의 경우 최소 5~10명<br>모집 시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코인세탁실      | 76.11㎡        | 지하 2층           | 생활편의<br>공간              | •면적에 맞는 세탁기, 건조기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운영주체 : 위탁(런드리고)<br>•초기시설비 : 사업자 부담<br>•운영비 : 사용료 부과<br>•운영시간 : 24시간<br>•운영방법 : 입주민 누구나 선착순 사용                 |
| 북카페        | 129.75㎡       | 19층             | 문화생활<br>공간              | •1인용 및 다인용책상, 이동식 의자 등 이동식가구 배치<br>•입주민의 입주 문의 및 민원 관리를 위한 커뮤니티 데스크 설치        | •운영주체 : 위탁 (이서비스즈)<br>•초기시설비 : 사업자 부담<br>•운영비 : 공동 관리비 부과<br>•운영시간 : 09:00~21: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 •입주민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<br>(출입확인 장치 필요X)                       | •운영방법<br>- 입주민 누구나 이용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회의실<br>(멀티룸) | 32.52㎡ | 문화생활<br>공간 | •다인용책상 2개<br>•의자 12개<br>•필요 시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한<br>공용 소모 물품 구매 | •운영주체 : 위탁(이서비스즈)<br>•초기시설비 : 사업자 부담<br>•운영비 : 사용료 부과<br>•운영시간 : 09~22시<br>•운영방법 : 입주민누구나,선<br>착순 신청 |

※ 입주 시점에 입주자 사용을 전제로 하며, 입주자에게 즉시 사용을 허용할 예정입니다. 단, 입주 초기 (다수의 미입주 세대 발생 시) 시설 이용에 따른 공용관리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

- 해당 시설은 공용관리비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※ 해당 시설 이용요금 중 (운영에 따른 소요 비용은 제외한) 일정 부분은 부대수입으로, 각 세대 당 관리비 절감 목적으로 활용됩니다.

- 해당 시설은 외부인 출입이 제한됩니다.

※ 임대사업자가 선정한 주택임대관리업체에서 계약자 관리, 시설 관리, 임대 관리(주거서비스 및 임대차 계약 관련 일체)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일부 부대복리시설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- 공간(+설치) 및 운영 계획 변경은 임차인대표회의 의결 등을 거쳐 진행할 예정입니다.

※ 입주 시 가능한 즉시 입주자 사용토록 할 예정입니다.

#### ■ 부대시설 환경

#### ● 세대 내부 환경

| 세대 내부 환경       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구분             |     | 주요시설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현관             |     | 수납장(신발장)      | 전세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침실<br>거실<br>주방 | 가구  | 불박이장(옷장), 싱크대 | 전세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가전  | 에어컨           | 삼성 천정형 에어컨<br>- 20TYPE: 1대(8평형)<br>- 46TYPE: 3대(13평형 1대, 4평형 2대)<br>- 59TYPE: 4대(13평형 1대, 3평형 2대, 4평형 1대) |
|                |     | 냉장고           | - 20TYPE: 캐리어 KRD-T155WEH1 (155L)<br>- 46,59TYPE: 캐리어 KRFT286ATMWW (262L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 | 세탁기           | - 20TYPE: LG F9WTBQ (9kg 빌트인)<br>- 46,59TYPE: 캐리어 KWMT-130AWNWW (13kg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 | 전동빨래건조대       | - 46,59TYPE: 피노 FED-4P0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 | 쿡탑            | - 20TYPE: 쿠첸 CIR-BB23TOB1 (3,000W) - 2구<br>- 46,59TYPE: 쿠첸 CIR-BB33TOB2 (3,300W) -3구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 | 전자레인지         | - 20,46TYPE: 쿠쿠 CMW-A201DW(B) (20L)<br>- 59TYPE: 쿠쿠 CMW-2310DW (23L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 | 욕실, 화장실       | 비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수납장(욕실장)       | 전세대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설치된 가전 및 가구는 입주 전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세부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※ 설치된 가전 및 가구는 대체 및 제거가 불가능합니다.

※ 20타입은 전용공간의 효율을 위해 20타입 통합 실외기가 공용공간에 설치됩니다.

※ 냉장고와 세탁기는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기준에 따라 설치하였으며, 46,59타입에는 통돌이 세탁기가 설치됩니다.

※ 세대 발코니 천장에 설치된 전열교환기는 세대 내 원활한 환기를 위해 설치된 설비로 법적 기준(급기/배기관 이격거리 준수)에 따라 발코니 천장에 설치되었으며, 이는 정상적인 시공사항으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※ 발코니 내측벽 상부에 설치된 스프링쿨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설치된 소방설비로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.

● 단지 내부 환경

| 단지 내부 환경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주차장      | 총247대<br>공동주택 : 229 대 비주거시설 : 18대 | 장애인주차: 7대(포함)           |
| 재활용분리수거장 | 1개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상 1층                   |
| 관리사무소    | 1개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하 1층                   |
| 커뮤니티시설   | 피트니스, GX룸, 북카페, 세탁실, 회의실 등        | 지하 1~2층, 지상 1층, 19층     |
| 근린생활시설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상 1층                   |
| 통합실외기실   | 2~19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엘리베이터 홀 옆 별도 공간         |
| 엘리베이터    | 주거용 및 상가(근린생활시설)용 6대              | 주거용 5대 / 상가용(근린생활시설) 1대 |

※ 해당 내용은 입주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■ 관리비 예상 금액 (아래 내용 예시 및 참고)

● 대표 공급유형 공용관리비 추정액

(단위 : 원/월, VAT별도, m2)

| 공급유형    | 주거전용 (타입)         | 세대별 공용관리비 추정액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청년      | 20.5025㎡ (20TYPE) | 69,000원/월(VAT 별도)  |
| 청년/신혼부부 | 46.3766㎡ (46TYPE) | 153,000원/월(VAT 별도) |
| 신혼부부    | 59.9065㎡ (59TYPE) | 198,000원/월(VAT 별도) |

※ 공용관리비(공용부 전기료, 수도료 제외)를 추정 산출한 금액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, 전기·수도·가스 등은 사용량에 따라 실비 부과 됩니다.

※ 세대별 관리비 전기·수도·가스 등 또한 사용량에 따라 실비 부과 됩니다.

※ 주차장 운영 수익, 커뮤니티 시설 운영 수익 등에 따라 공용관리비가 절감될 수 있습니다.

※ 주차장 운영비용은 별도 계좌 관리(일반 관리비와 별도 관리) 예정입니다.

※ 주차장 운영비용 적자 시 입주자 부담으로 전가하지 않을 것입니다.

● 공용관리비 산출 내역 추정액

(단위 : 원/월, 일부 항목 VAT별도)

| 단지 내부 환경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일반관리비             | 28,797,146 | 관리사무소 인건비, 제사무비, 통신비, 소모품비, 용역비 등 |
| 청소비               | 5,758,379  | 용역비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소독비/저수조           | 302,642    | 법정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시설/수선유지비          | 1,681,291  | 소방점검, 승강기 유지관리 등                  |
| 공용(수도,전기,급탕,난방 등) | 3,430,599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타                | 4,589,123  | 발생 시 반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소계                | 44,559,180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관리비 차감액           | -          | 주차장 운영, 커뮤니티 운영, 잡수입 등 발생 시 차감    |
| 관리비 부과액           | 44,559,180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일반관리비(인건비 등)의 경우 "최저시급" 기준으로 작성되어 향후 소비자물가지수 및 최저시급에 따라 인상 될 수 있으며, 실제 운영 시 일부 변동 될 수 있습니다.

- ※ 인원투입을 최소화한 일반관리비로서 세대미화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일반관리비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※ 관리비 차감액 미반영 금액이며 추후 주차등록, 커뮤니티 운영 수익 등의 수익 발생시 관리비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.

#### ■ 단지 유의사항

해당 공고문의 입주자 유의사항은 중요사항만을 요약하여 안내하였으니  
입주자께서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여건 및 관리규약 등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● 공통사항

- 모집공고문에 소수점 2째 자리까지 표현된 면적은 면적 계산상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으로 인해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 상기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, 실측 정리 등에 따라 계약면적과登記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세대 공용면적(계단실, 부대복리시설, 지하주차장 등)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였습니다.
- 입주민 전용 주차구역 및 근린생활시설 주차구역은 원활한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한 운영 방침에 따라 구역 조정 등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은 계약 주요사항 안내의 정확성 확인 및 계약 관련 분쟁 예방 목적으로 음성 녹음됩니다. 청약 신청 시 본 사항을 인지한 것으로 간주되며 녹음 자료는 계약 종료 후 유보금 반환 시까지 보관됩니다.
- 분리수거장 운영은 관리 운영 계획에 따라 배출 가능 요일 및 시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, 입주 후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자전거 등 개인 이동수단은 반드시 지정된 보관 장소에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지정 장소 외 임의 보관으로 인한 분실 또는 파손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실 대지 측량 결과, 공부정리 절차 및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등에 따라 부지경계 및 대지경계선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이로 인하여 조경라인(수목, 수경, 시설물, 포장 등), 각종 인쇄물, CG 이미지 상의 구획선,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, 설계도면 등의 표시, 대지 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사용승인(준공) 또는 임차인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 가입 절차 진행이 지연될 경우 등 당사의 사정에 따라 입주지정기간이 변경 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개별통보 됩니다.
- 각 세대의 전실 및 홀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주거전용(타입) 별로 서비스 면적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-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, 최초 입주 시 작성한 시설물 인수 인계서에 기재된 내용물의 망실, 손괴 등에 대하여 임차인의 비용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환 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. 기타 임차인(동거가족 포함)의 원상복구 범위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.
- 입주자 퇴거 시 세대 주거전용 부분 시설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, 부주의로 인해 파손 또는 고장이 있는 경우, 임차인은 원상복구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, 그 비용에 관해 권한 있는 제3자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유보금(최대 300만원 한도(파손(고장) 정도에 따라 차등)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단, 그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유보금을 증액할 수 있음)으로 우선 공제할 수 있습니다. 우선 공제한 유보금에서 원상복구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정산한 나머지 차액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반환됩니다.
- 상기 유보금 300만원과는 별개로, 미납 임대료·관리비·연체료 등 제반 납부금액은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될 수 있습니다.
- 본 주택의 모든 공간(주택 전용부와 공용부를 모두 포함한 전체 공간) 및 단지 내 외부공간은 모두 금연 구역입니다. 흡연 적발 시 즉시 퇴거조치 및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퇴거 시 흡연 흔적이 있을 경우 전체 벽·천정 도배 및 청소비용 등 원상회복 비용이 청구됩니다.
- 기타 쓰레기 무단투기, 과도한 소음, 폭언, 폭행 등 공동주택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적·윤리적 문

제 행위가 적발될 경우, 향후 제정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임차인대표회의 의결을 통하여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 입주 후 정식 임차인 대표회의 결성 이전에 형성된 임차인 모임에 대하여는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, 임차인은 개인적으로 또는 임의로 형성된 임차인 모임을 통하여 임대사업자 및 그 관계자에게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요청이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-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입주지원센터를 통해 전화상담 및 대면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나 상담 내용은 참고로 활용해주시기 바라며, 정확한 내용은 임차인 모집공고 및 관계법령 등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기타 본 임차인 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시설 관리에 대한 사항 등은 주택 임대차계약에 따릅니다.

-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,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에 사업주체가 지정한 양식으로 퇴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(임차인 임대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위탁한 주택관리업체가 지정한 양식으로 퇴거신청서를 제출)

- 청약에 적용되는 주택 타입명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표기된 타입 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- 2층 외부 연결 계단(관리 전용), 2~19층 통합 실외기 발코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입주민의 출입이 통제됩니다.

- 옥상 조경공간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입주민 출입이 통제·제한 될 수 있습니다.

- 다음 각 호의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: ① 임대료 3개월 이상 연체, ② 관리비 3개월 이상 연체, ③ 임대료와 관리비 합산액이 3개월분 임대료에 도달한 경우.
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, 임대인은 사전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·해지할 수 있습니다.

-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·운영기준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,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- 본 단지는 특약사항 공동의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(건물 내 흡연, 폭언 및 폭행, 고의 기물파손 등) 임대차 계약 특약에 의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계약 체결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.

- 임대차 기간 중 미납 독촉 통지가 누적 8회 이상 발생한 경우,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- 계약 갱신 시점에 미납금이 있고 독촉 후 7일 이내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,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## ● 단지환경

- 사업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 증산역 1번 출구에서 직선거리 250m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

- 당 단지는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였으며, 주동배치 및 건물 입면의 장식, 주변 단지의 신축,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동·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동호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- 단지 지상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저층 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- 단지 1층과 19층 복도에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으니,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단지 지상 19층 일부시설에 북카페가 설치되며, 인접한 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, 기능 및 성능개선에 의한 내부 디자인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- 19층 외부 조경으로 출입하는 출입문은 빗물유입방지를 위해 문턱(단차)이 설치되어있습니다. 출입시 발걸음에 유의하시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

- 북카페의 가구류가 제공되며 기타 주민공동시설의 가전,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.

- 지하주차장 자동차 출입구는 자동차 출입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일부 저층부 세대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.

- 지상1층 출입구에 인접하여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어 저층 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D.A에 연료전지용 급배기구가 설치되어, 겨울철 수증기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.
- 건물 옥상 층에 환기를 위한 벤츄레이터가 계획되어 있으며, 이에 따라 인접한 세대의 경우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해 인지하시기 바랍니다.
- 건물 옥상 층에 정화조 배기팬이 설치되어 인접 세대에 소음 및 진동,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건물 옥상 층에 세대주방 및 욕실 공동배기용 배기구가 설치되어, 인접세대에 소음 및 진동,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건물 옥상 층에 근린생활시설 배기용 장비가 설치되어, 인접세대에 소음 및 진동,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#### ● 단위세대 유의사항

- 단위세대 빌트인 세탁기의 경우 20형에 제공되며 쿡탑 하부에 설치될 예정이오니, 기타 자세한 위치 등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세대 내 기 설치된 가전제품 및 가구는 임의로 교체하거나 철거하실 수 없으며, 임의 변경 시 계약 종료 시점에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합니다.
- 단위세대 빌트인 냉장고의 경우 전 타입에 제공됩니다.
- 입주자가 사용을 희망하는 가전제품(냉장고, 김치냉장고, 세탁기, 건조기, 에어컨 등 일체의 이동식 가전) 및 가구 등이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퇴거 시에는 입주 시 제공된 품목은 원상회복하여 정상적인 작동이 확인된 후 반환하셔야 하며, 미반환 시 신품비용과 함께 설치비용이 추가로 포함되어 청구됩니다.
- 바닥 마감재 특성상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으며, 자재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합니다.
- 석재, 인조대리석 자재의 이음부는 자재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합니다.
- 각 세대별 기본제공품목(일반가구, 주방가구, 마감자재, 기기류) 및 유상제공품목이 상이하며,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가 주택형(타입) 별로 상이하므로 분양홍보물, 인쇄물 및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단위세대 기본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,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합니다.
- 생활환경(관상용식물, 샤워, 빨래건조, 가습기 가동 등), 단열성능,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 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(습도 증가)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,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.
- 단위세대에는 에어컨, 쿡탑, 침실 불박이장 등이 설치되며, 입주 전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세부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지상 1층에는 비주거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외부인의 통행으로 일부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단위세대의 경우 동일한 타입 간 호수별 평면 레이아웃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.
- 엘리베이터 홀과 인접하여 공용 실외기실이 위치하여 있으며,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주변 부지 개발에 따른 소음, 진동, 분진, 전자파, 전자기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제반 환경의 변화로 일조권·조망권 등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변 개발 현황을 면밀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- 단지 내 도로·상하수도·가스·학교·공공시설·가로공원 등의 각종 기반시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가·지자체·교육청 등 관련 기관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.

● 기타 유의사항

-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입니다. 이에 따라 “공공주택관리법 시행령” 제 19조 및 “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” 제 83조 등에 의거하여, 청년안심주택에서 반려동물과 공동거주가 가능합니다. (다만, 공동주거 생활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,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에 따라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)
- 성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이 주택의 청약 신청이 불가하며, 성범죄자는 적발 즉시 당첨 취소, 퇴거 조치 및 임대차 계약이 해지됩니다.
-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이력이 있는 경우 청약 신청이 불가하며, 적발 시 당첨 취소, 퇴거 조치 및 임대차 계약이 해지됩니다.
- 본 주택은 원활한 주택관리를 위하여 SKT, KT, LG U+ 등 인터넷 통신사를 지정하지 않고 인터넷 통신망을 병행 구축할 계획이며, 인터넷 가입 및 이용 등은 입주자께서 직접 선택하여 별도로 신청하셔야 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라며,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- 엘리베이터는 15인승 5대, 13인승 1대가(승용·장애인 겸용) 설치되어 있습니다.
- 엘리베이터(E/V)실, 설비배관실(PD), 배연설비시설, 급기실(A/D), 전기통신실(EPS/TPS) 등은 인허가 당시 기준 공용면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, 향후 운영상 관리비의 부과, 또는 분양전환 시 공용면적에 포함되어 산정 될 수 있습니다.
- 주차대수는 총 247대 중 장애인 주차장 7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
- 근린생활시설로 진입하기 위한 보행자 부출입구, 보도, 통로 등은 점포 상가 입주사(방문객 포함)와 주택 입주자가 공동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지상 19층에는 북카페, 회의실이 계획되며,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지상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.
- 지하 2층에는 코인세탁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.
- 공공시설에는 소음, 진동 및 다중의 집객으로 인한 혼잡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당해 단지를 반드시 방문하여 소음·환경저해 등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주변 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- 각종 조감도,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, 인쇄 및 편집 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.
- 기계실 비상발전기실, 전기실,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를 위한 급·배기용 환기탑(DRY AREA)이 일부 세대 주변에 설치되어 소음, 냄새 및 비상발전기 운전 시 매연 등에 의해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, 가로등, 자전거보관소, 쓰레기함 등이 주변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어 이로 인한 냄새, 미관저해, 소음, 매연, 진동, 불빛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화재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원활한 소방구조 활동을 위하여 옥탑 공간 일부에 인명구조공간이 설치됩니다.
- 단지 내 주차장 출입구, 보행자 주·부출입구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의 경우 주통행도로, 인근산책로, 부대시설 이용 등으로 자동차 전조등, 보안등, CCTV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,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된 자동차 출차 주의등과 경보 등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경보음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주택 내 호수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, 기계식 주차, 비상발전기, 각종기계, 환기, 공조설비, 실외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주택 내 호수별 위치에 따라 같은 방향이라도 층에 따라 인접 건물 또는 향후 건축될 수 있는 건축물로 인한 일조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, 해당동의 저층부 일부 세대는 공용재산인 조경용 수목으로 인한 조망권, 일조권 침해 및 가로등 설치로 인한 세대내부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- 지하2층~지상2층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등과 연결된 통로,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로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, 하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- 옥상층에 체육시설 및 휴게정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엘리베이터가 옥상층까지 운행하며 최상층 세대원을 위하여 출입시간이 제한됩니다.
- 본 청년주택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방문객에 대하여 무료주차 또는 할인 주차가 허용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- 당 단지는 가족 및 지인의 방문주차(이사 등 특수상황 제외)가 불가합니다.
-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14조의11에 따라 다음의 경우 임대주택의 명도 및 퇴거 사유에 해당합니다. 1)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 2) 다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3) 임차인(임차인의 자격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을 포함)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

#### ■ 임차권 양도 및 전대 금지

- 해당 단지는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임차인의 전대 행위 및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. 임차인은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으며,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 이를 사전에 인지하시어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관리주체는 계약자의 거주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 임대주택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, 양도 및 전대확인 등의 아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전유부분에 출입할 수 있으며,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관리주체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.
  - 가. 민간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무단으로 양도하거나,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
  - 나. 민간임대주택을 대여 및 수익 활동에 사용하는 행위
- 상기 사유가 확인되는 세대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무단 양도·전대 시 입주 전에는 계약금 중 100만원을, 입주 후에는 위약금(해약 당월 표준형 임대료 24개월치의 10%)을 공제하고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이 주택은 청약자(당첨자)와 계약자, 입주자(전입자)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합니다. \*신혼부부 형의 경우, 청약자(당첨자) 명의로 계약 체결(공동명의 계약 불가). 따라서, 향후 사업 주체가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제·해지 및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#### ■ 전입 사실 관련

- 당첨자는 입주 시 즉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 본 주택은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으로써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 계층만 입주가 가능하며, 청년 계층 입주자는 본인 1인에 한하여 입주 및 전입신고가 가능하고, 신혼부부 계층 입주자는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한하여 입주(동거) 및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. 그 외 제3자의 추가 입주(동거) 및 전입신고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퇴거조치 및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- “임차인”은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. 또한, 사업자(임대사업자)는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,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임대무기간 동안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 이를 사전에 인지하시어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청년주택(1인가구)이나 신혼부부형 주택에서 허용되지 않은 동거인의 거주가 확인되거나 추가세대원 등록의 경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계약은 해지되고, 당해 주택에서 퇴거하셔야 하며,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퇴거 시 및 퇴거 이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- 본 주택은 주거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.

■ 이랜드 PEER DMC 청년안심주택 위치



- 단지 주소 : 서울시 서대문구 응암로 123
- 홍보관 주소 : 서울시 서대문구 응암로 126, 2층 홍보관
- 홈페이지 : <https://elandpeer.com/dmc>
- 대표번호 : 1551-8970